

수원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가단5731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2. 14.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2017. 11. 20.자 91,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사 최환영

[별지]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피고는 소외 B(이하 'B'이라 합니다)의 아들이고, 원고는 B에게 국세 채권이 있는 자입니다(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참조).

나.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발생 경위

원고 산하 금천세무서장(이하 '원고'라 합니다)은 B이 C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22,000주를 2009. 5. 6. 양도후 무신고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270,748,510원 고지하였으나 B이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등 203,061,250원을 포함하여 473,809,760원 채납하였습니다.

또한, B이 D 주식회사 비상장주식 25,000주와 E 주식회사 비상장주식 25,000주를 2009. 5. 6. 양도후 무신고하여 원고는 양도소득세 244,344,600원을 고지하였고 B은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등 183,258,130원을 포함하여 427,602,730원을 채납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5건의 채납액을 포함하여 B은 <표1>과 같이 소제기일 현재 총 1,516,580,68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채납하고 있습니다.

<표1> B의 소재기일 현재 국세채납액(갑 제2호증 채납유무조회 참조)

(단위 : 원)

세 목	귀 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채납액	관할서
양도소득 세	2009	2009.12.31.	2012.8.3 1.	270,748,51 0	473,809,76 0	금천
양도소득 세	2009	2009.12.31.	2013.2.1 5.	244,344,60 0	427,602,73 0	금천
양도소득 세	2009	2009.12.31.	2016.11. 30.	215,285,45 0	341,873,13 0	반포
종합소득 세	2008	2008.12.31.	2017.10. 25.	154,137,48 0	237,726,91 0	반포
기타경상 이전수입	2019	2019.11.27.	2020.2.4.	120,000	120,000	반포
증여세	2006	2006.12.21.	2010.11. 30.	15,404,290	21,702,990	제천
법인세	2008	2008.12.31.	2013.12. 18.	7,854,530	13,745,160	제천
합 계				907,894,86 0	1,516,580, 680	

다. B의 현금 증여 경위

피고는 2021년 증여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받고, 피고가 대표자로 제직한 F 주식회사

의 주식 취득자금 출처를 해명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2017. 11. 20. 부친인 B으로부터 91,000,000원을 현금증여(이하 '이 사건 현금증여'라고 합니다) 받고, 2017. 11. 17. 이모 G으로부터 10,000,000원을 현금증여 받은 사실을 해명자료로 제출하였고, 2021. 9. 10. 위 두 건의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고, 증여세 6,313,590원을 납부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내역, 갑 제4호증 증여세 기한후 신고서, 갑 제5호증 증여세 수납내역 참조).

<표2> 피고가 증여 받은 내역

(단위 : 원)

순번	거래일자	거래금액	상대예금 주	비고
1	2017.11.17.	10,000,000	G	H조합 인터넷뱅킹 계좌 거래내역 제출 (갑 제3호증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내역 참조)
2	2017.11.20.	91,000,000		갑 제4호증 증여세 기한후 신고서 및 갑 제5호증 증여세 수납내역 참조
합계		101,000,000		
		0		

2.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데,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세 및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합니다.

B의 채납국세 중, B의 소유이던 비상장주식을 2009. 5. 6.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2009. 12. 31. 이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2008. 12. 31.입니다. 또한, 2006. 12. 21. 증여받아 발생한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증여일인 2006. 12. 21.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기타경상이전수입 120,000원을 제외한 1,516,460,680원은 이 사건 사해행위일(2017. 11. 20.)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사해행위

1) 사해행위의 의미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

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현금증여 당시 B은 아래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이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갑 제6호증 채납자 재산 전산자료 참조).

<표3> 이 사건 현금중여 당시 B의 재산내역

(단위: 원)

구분	세부내역	평가액	비고	
적극 재산	토지	경기도 영월군 I 1/2지분	18,268,800	17,300원×2112㎡×2분의 1 갑 제7호증 개별공시지가 갑 제1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
		경기도 영월군 J 1/2지분	9,396,000	14,500원×1296㎡×2분의 1 갑 제7호증 개별공시지가 갑 제1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
		경기도 영월군 K 1/2지분	24,706,600	13,100원×3772㎡×2분의 1 갑 제7호증 개별공시지가 갑 제1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
		경기도 영월군 L 1/2지분	23,261,550	15,100원×3081㎡×2분의 1 갑 제7호증 개별공시지가 갑 제1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
		경기도 영월군 M 1/2지분	13,708,800	15,300원×1792㎡×2분의 1 갑 제7호증 개별공시지가 갑 제1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
		충청북도 음성군 N	5,105,700	27,900원×183㎡ 갑 제7호증 개별공시지가 갑 제1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
	주식	O(주)(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3,000주	0	2017.11.20. 중여일을 평가기준일로 계산 갑 제8호증 비상장주식 간이평가내역
	예금 채권	P은행	21,959	갑 제9호증 금융거래조회내역
		Q은행	23,531	
		R은행	119,390	
		H조합	103,415	
	소계		94,715,745	
국세	양도소득세 등	1,335,667,980	<표4> 참조	
소극 재산	근저당	근저당부채(I외)	570,000,000	근저당권자 : 중소기업은행 갑 제10호증 근저당 실행권 잔액 회신 회신금액에 저분율 2분의 1 급한 금액
	근저당	근저당부채(I외)	0	근저당권자 : R은행 갑 제10호증 근저당 실행권 잔액 회신
	근저당	근저당부채(N)	200,000,000	근저당권자 : S 갑 제1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
	근저당	근저당부채(N)	308,000,000	근저당권자 : T조합 갑 제1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
	가압류	서울남부지방법원 가압류 (2010카단5216)	7,879,520	채권자 : U 갑 제1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
	가압류	청주지방법원 가압류 (2010카단4376)	100,000,000	채권자 : 기술신용보증기금 갑 제1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
	가압류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가압류 (2011카합16)	300,000,000	채권자 : V 갑 제1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
	소계		2,821,547,500	
	합 계		-2,726,831,755	

<표4> 증여당시 채납액

(단위 : 원)

관 할 관 서	납세의무 구분	납부기 한	성립일 자	세목	누계 채납액	본세	가산금
금	원납세자	2012.8.31.	2009.12.31.	양도소득세	473,809,760	270,748,510	203,061,250
천	원납세자	2013.2.15.	2009.12.31.	양도소득세	418,806,340	244,344,600	174,461,740
반	원납세자	2016.11.30.	2009.12.31.	양도소득세	250,161,630	215,285,450	34,876,180
포	원납세자	2017.10.25.	2008.12.31.	종합소득세	158,761,600	154,137,480	4,624,120
포	원납세자	2010.11.30.	2006.12.21.	증여세	21,702,990	12,215,910	9,487,080
제	제2차 납세의무 자	2013.12.18.	2008.12.31.	법인세	12,425,660	7,854,530	4,571,130
천	합계 :				1,335,667,980	904,586,480	431,081,500

다.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삼입됨으로써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B은 2009년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등 체납액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91,000,000원을 증여하였습니다. 이는 국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 한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B의 자녀인바, 이 사건 현금증여 당시에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라. 사해행위를 안 날

이 사건 사해행위일은 2017. 11. 20.이므로 본 소의 제기는 사해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사해행위를 안 날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채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원고 산하 금천세무서 관할 체납 담당 국세조사관은 국세채납액 징수를 위해 2022. 6. 29. B의 재산 전산자료를 검토하던 중 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현금증여 사실 및 이 사건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적법한 소제기라고 할 것입니다(갑 제12호증 전산 확인대상 화면 참조).

마. 소결

이 사건 현금증여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인 바, B과 피고 사이에 2017. 11. 20. 91,000,000원에 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따라 전부 취소되어야 합니다.

3. 원상회복 청구

위와 같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